

# 건설폐기물 배출지별 중간처리단가

## 1. 도로, 교량, 옹벽 철거공사

(단위: 원/톤)

배출지	품명	적용범위	적용단가
도로, 교량 옹벽 철거공사	페콘크리트	토목 구조물 해체시 발생하는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페콘크리트	28,516
	페아스팔트콘크리트	포장도로에서 발생하는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페아스팔트콘크리트	30,488

## 2. 재건축·재개발 공사

배출지	품명	적용범위	적용단가
재건축·재개발 공사 (주택·아파트 등 철거·해체 공사)	건설폐재류	가연성폐기물이 제거된 상태로 페콘크리트, 페아스콘이 일부 포함되어 있고, 폐벽돌, 폐기와, 폐토사 등 재활용이 가능한 비금속광물질이 각각 또는 혼합배출된 상태	47,205
	건설오니	준설공사, 굴착공사, 지하구조물공사 등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하거나 건설폐재류를 중간처리하는 과정 또는 건설공사장 세륜(洗輪)시설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로서 함수율 85%이내로 건조되어 운반 및 처리 가능한 상태	59,352
	혼합건설폐기물	건설폐재류에 가연성 건설폐기물이 중량 기준 5% 이하 혼합된 것	68,359

## 3. 기타 혼합건설폐기물

배출지	품명	적용범위	적용단가
재건축·재개발 공사 (주택·아파트 등 철거·해체 공사)	혼합건설폐기물	불연성 건설폐기물(페유리, 페타일, 폐자기 등)에 가연성 건설폐기물의 함유량이 중량 기준으로 5% 이하 혼합된 경우	166,426
		그 밖의 건설폐기물(페보드류·페판넬※) 등에 가연성 건설폐기물이 중량기준으로 5% 이하 혼합된 경우 ※ 페샌드위치판넬은 주로 난연성 재료 또는 페단열재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기존 페판넬과 처리방법 및 단가 등이 상이하므로 해당 단가 적용불가(페샌드위치판넬 처리단가는 별도로 산정하여 적용 필요)	170,497

### [해설]

- 동 처리단가는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,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6조,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653호(2023.6.16) "예정가격작성기준", 행정안전부 예규 제252호(2023.6.29) "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" 등 예정가격 산출기준 관련 법령에 의거 산출됨
- 동 처리단가는 「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발주하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예정가격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, 경유가, 노임, 원부자재, 수리수선비, 소모품료 등의 기준과 2023년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반영하여 원가계산한 결과임
- 동 처리단가에는 이윤, 일반관리비, 중간처리 후 발생하는 2차 폐기물(최종처리대상 폐기물)의 처리비·폐기물처분부담금 및 운반비가 포함되었으며, 수집운반비 및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않음
- 처리대상폐기물의 규격이 80\*80cm 이상으로서 별도의 소할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「건설공사 표준품셈」 [공통부문]8-2-15 '대형브레이커' 품 등을 참고하여 소할품의 별도 계상이 필요함
- 동 처리단가를 기준으로 예정가격 산출 시 건설현장(배출현장)에서의 분리·선별비용을 처리비에 포함하여서는 안 되며, 페아스팔트콘크리트 처리비용은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단가가 아님
- 가연성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음에도 이를 '페콘크리트' 또는 '건설폐재류' 등으로 설계하여서는 안 되며, 동 처리단가는 폐기물 발생 성상, 지역, 발생물량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, 3차 파쇄시설을 기준으로 산정됨  
(다만, 단가를 예외적용 할 경우 그 산출근거 및 관련 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함)
- 동 처리단가는 건설폐기물의 중간처리과정에서 생산되는 순환골재의 판매 수익을 차감한 단가임  
(2024.1.1부터 적용)